

##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

해당표준번호	SPS-KPRA-1501-6237
--------	--------------------

---

해당표준명	재활용제지원료
-------	---------

---

제정연월일	2015년 5월 26일
-------	--------------

---

개정연월일	2020년 7월 21일
-------	--------------

---

한국제지자원진흥원

# 1. 일반심사기준

## 가. 표준화일반

심사사항	구비요건
(1) 사내 표준화, 품질 경영의 추진	경영 책임자는 표준화와 품질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의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2) 사내 표준화와 품질경영 도입의 확산을 위한 활동	표준화와 품질경영도입 및 확산에 노력하고, 품질경영체제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1년 주기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3)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 훈련의 실시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경영간부에 대한 표준화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훈련 실적이 있어야 한다.(진흥원 내의 교육 이수 시 인정) 당해업종 및 규모에 적합하고, 품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4) 품질관리담당자 확보	품질관리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의 실시에 관한 지도·조언 및 부분의 조정</li> <li>• 공정에 생기는 이상·고충 등에 관한 처치 및 그 대책에 관한 지도 및 조언</li> <li>• 종업원에 대한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 훈련 추진</li> <li>• 원료 공급처(고물상 등)에 대한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언</li> <li>• 불합격품 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li> <li>•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 업무 관장</li> </ul>
(5) 불만처리 및 로트추적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는 내부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보와 불만사례 등에 대하여 경로를 추적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조치하고 있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료 공급업체(고물상 등)의 시설 및 품질관리에 대한 조치</li> <li>• 수요자 이의제기에 대한 조치</li> </ul>
(6) 작업환경 및 안전시설 등의 관리상태	청정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활동이 회사 전체적으로 실행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작업능률의 향상과 종업원의 복지를 고려한 작업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나. 원료의 관리

심사사항 주요자재명	구비요건
---------------	------

	검사항목	원료품질기준	검사방법	이행사항
표준에서 정한 제지원료를 포함하여 정하여야 한다.	표준에서 정한 주요 원료별로 검사항목을 정하여야 한다. •원료 공급처(고물상 등)의 원료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원료의 품질기준은 생산제품의 품질이 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원료의 검사방법은 제품의 품질이 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기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사내표준에 의하여 자재를 인수할 때의 품질검사(이하 이표에서 “인수검사”라 한다) 및 원료를 관리하고, 원료를 관리하는 자가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체표준 또는 단체표시제품은 인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li> <li>2. 양질의 원료라고 인정될 때에는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검사서로 인수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li> <li>3. 원료의 종류, 품질상태 등에 따라 검사를 생략하거나 검사 항목을 증감할 수 있다.</li> </ol>				

다. 공정관리

심사사항 주요공정명	구 비 요 건			
	검사 또는 관리항목	검사 또는 공정관리방법	이행사항	제조작업표준
1. 선별  2. 압축  3. 밴딩	.종류별 선별 (OCC, ONP, WL) .이물질, 수분 (육안), (지촉) .압축하중 (유압, 속도) .밴딩 상태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공정관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사내 표준에 따라 관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활용하고, 공정 관리자가 규정대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각 공정에 대하여 사용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비고 제품 특성상 중간검사는 불필요				

라. 제품의 품질관리

심사사항 검사사항	구 비 요 건		
	제품의 품질기준	검사방법	이행사항
표준에서 정한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	제품의 검사방법은 제	• 제품의 품질에 대한

<p>품질검사 항목을 포함하여 정하여야 한다.</p>	<p>내표준은 단체표준의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p>	<p>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규정하여야 한다.</p>	<p>사내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공정개선 및 제품의 품질향상에 활용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 체제 전반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li> <li>• 시험 검사자가 단체표준 및 사내표준에 따라 시험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li> </ul>
-------------------------------	--	---	---

마. 제조설비의 관리

주요 설비명	구비요건
<p>표준에서 정한 주요 제조설비를 포함하여 정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제품의 생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보수·유회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li> <li>• 압축설비 및 포장된 바닥(이물질 방지용)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li> <li>• 지정된 설비관리자가 설비관리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li> </ul>

바. 검사설비의 관리

주요 설비명	구비요건
<p>1. 저울 2. 항온건조기 또는 전자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의 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정밀도·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교정을 실시하되, 사용빈도와 측정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li> <li>• 시험·검사설비관리자는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li> </ul>
<p>1. 저울은 0.01mg의 정밀도를 가진 디지털식 저울이어야 한다.</p>	

사.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번호	검사 항목	로트의 크기	시료의 크기	판정 기준		비고
				Ac	Re	

1	수분함량	종류별 재고량	8	0	1	현장 또는 외부시험
2	이물질 함량	종류별 재고량	8	0	1	

**아. 표준 표시의 방법**

제품의 단위	표시 부위	표시 방법	표시 내용
매 제품 마다	외면 (보기 쉬운 곳)	꼬리표	1)단체표시 인증표시 2)인증번호/인증발급일자 3)생산 일자 4)생산자 5) 치수 및 무게 6)기타

**자. 제품의 인증 구분**

단체 표준 제품 번호	표 준 명	종류 또는 등급
SPS-KPRA-1501-6237	재활용 제지 원료	종류별(OCC, ONP, WL)

**2. 단체표준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

가. 단체표준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은 제1호 일반 심사기준에 다음의 1)부터 6)까지 사항을 포함하여 인증단체가 단체표준에 따른 품목별 특성에 적합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한다.

- 1) 품목별 특성을 고려할 때 제1호의 인증심사기준 중에서 일부 변경이 필요한 사항
- 2) 품목별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 절차·방법 등 단체표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 3)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방식
- 4)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 5) 제품인증표시 방법
- 6) 제품의 인증구분(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등

나. 단체표준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의 표지에는 1)에서 4)까지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1) 단체표준번호
- 2) 단체표준명
- 3) 제정 연월일
- 4) 개정 연월일(개정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 인증심사 결과 판정 기준

### 1. 적용범위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33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46조에 따른 사후관리, 제49조에 따른 공장·사업장 이전 심사 및 제5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특별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 2. 판정기준

#### 가. 공장심사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보고서의 심사사항별 평가 항목에 대하여 100%(만점), 50%(배점의 1/2), 0%(0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 중 총평점이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 50점 이상일 경우 보완, 5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나. 제품심사

제품의 품질시험 결과가 단체표준의 기준치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비고] 인증심사기준은 단체표준에 따른 품목별 특성에 적합한 심사기준에 따른다.